

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
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허창원 의원 등 31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9년 8월 13일
- 회부일자 : 2019년 8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자행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통해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함(안 제3조)
-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4조)
- 충청북도 공기관과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(안 제5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민족의 수탈로 성장한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공공구매를 제한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도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.
- 일본 전범기업 제품은 국산 제품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음에도 구입처가 일본 전범기업이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.
- 최근 일본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임. 따라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은 의의가 있음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에서는 전범기업에 대한 정의를 하였음. 일본 전범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'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'가 조사·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여 생명·신체·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범죄기업으로 정의를 하였음.
 - 안 제3조에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 및 금액을 규정하였으며
 - 안 제4조에서는 도내 공공기관이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음.

- 충청북도 내 공공기관은 도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물품에서 만큼은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, 이것은 전범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. 끝.